

2019년도 정기감사 결과(국외출장 운영 및 관리 실태)

1. 목적 및 배경

- 국외출장 운영·관리 적정성 자체 점검을 통한 기관운영 합리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 도모
- "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"(2018.7.26.) 등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이행

2. 감사 범위, 대상 등

- (감사범위) 최근 3년간('16.1월 ~ '18.12월) 실시된 국외출장
- (대상부서) 국외출장 주관부서(대외홍보실), 출장경비 집행부서(경영지원실), 내규 주관부서(기획조정실) 및 출장 시행부서(각 부서)
- (감사인원) 2명 (이창현 실장(감사반장), 박두현 부장)
- (감사기간) 2019.4.15.(월) ~ 4.22.(월) (6일)

3. 감사 결과

- (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한 내규 개정)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"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"(2018.7.26.)과 "2019 청탁방지 담당관 워크숍"(2019.3.20.) 등을 통해 국외출장 제도 개선*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음. 동 권고사항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외출장 제도 운영 및 올바른 관행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.

* (제도 개선 사항)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, 세부 심사기준 마련, 서면심사 제한,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,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, 이해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·의결 제한, 계약·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,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 등

□ (법률 위반 대책 마련)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제도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임. 국외출장은 토·일요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「근로기준법」 제58조제1항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국외출장에 따른 위법사항 발생이 우려됨.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「근로기준법」에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4. 후속조치

-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기한 이내 조치 완료 및 감사실 통보
- 조치사항 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, 2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추진 일정 및 계획 등 우선 회보 후 조치 완료 시 지체 없이 회신

	지적사항	조치사항	관련 부서
1	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한 내규 개정	(개선) 국외출장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규(지침) 전면 개정	대외홍보실 (대외협력팀)
2	「근로기준법」 위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	(개선)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「근로기준법」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 합의 등 대책 마련	기획조정실 (인력개발팀)